

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

2024. 10. 16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I . 선도사업자 1차 선정결과 및 추가선정 계획 ..	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 .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현황 및 계획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[참고 1]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	3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[참고 2] 공급망안정화기금 `24년도 기금운용계획 ...	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. 선도사업자 1차 선정결과 및 추가선정 계획

1. 1차 선정개요

- 공급망안정화법 시행(6.27일)에 따라 부처별로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* 선정 추진

* (선도사업자)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화 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(법 제19조)

- (일정) 공고(6.27일) → 접수(부처별 ~7.26일) → 심사(~8.9일) → 선정(8.14일)

〈 선정 세부내용 〉

- ① (선정기준) ①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②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③재무여건
- ② (지정기간) 3년 (소관부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5년까지 가능)
- ③ (지원혜택) **공급망안정화 기금 중점지원** + 기타 정책지원(세제·재정·금융)
- ④ (의무사항) 자료제출 및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협조

2. 1차 선정결과 : 105개 기업 신청 → 84개 선정(8.14일)

-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('24.6.27~7.26일) → 경제안보 품목 55개/서비스 2개 항목에 **84개***(품목 79 + 서비스 5) **기업 선정**(8.14일)

* 총 84개 중 대기업 21개, 중견기업 23개, 중소기업 38개, 공공기관 1개, 협동조합 1개

3. 추가선정 추진계획

- 공급망안정화사업 신규발굴 및 공급망기금 활용 확대를 위해 선도사업자 추가 선정 진행 중(부처별 수시선정)

〈 1차 vs 추가 선정('24년) 〉

구분	1차	추가 선정	비고
공고 방법	전 부처 합동공고	부처별 개별공고(9~12월)	
접수 기간	'24.6.27~7.26일 (1개월)	부처자율	
적격 심사	~ '24.8.9 (2주간)	부처자율	
선정 통보	~ '24.8.14	선정일 익일까지 기재부 통보	
선정 기준	① 경제안보품목과 관련성 ② 안정화계획의 적정성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④ 부처별 추가기준(필요시)		1차와 동일

- 현재 5개 부처(산업부, 농식품부, 식약처, 환경부, 중기부) 추가선정 진행 중

- 선정 실적을 감안하여 '25년도는 선정 주기 재검토

Ⅱ.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현황 및 계획

1. 운용 현황

- 공급망안정화법 시행('24.6.27)에 따라 '24년 하반기 5조원 규모 (정부 보증)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9.5일 출범, 본격 지원개시

① (기금운용심의회) 총 7명으로 구성, 9.5일 위촉

- 국회 기재위 추천 2명, 기재부·외교부·산업부·금융위 추천 각 1명, 수은 임직원 1명

② (기금운용계획) 제1회 기금운용심의회(9.5) 의결

- 시행초기 대출 중심으로 운영하되 간접투자도 병행

- (대출) 9.27일 최초로 1,520억원(4개사) 대출 승인

- (투자) 공급망기금과 수은 공동출자를 통해 1조원* 규모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 조성 추진 (9.12일 공고, '25년 상반기 펀드결성)

* (규모) 1조원 = 공급망기금 1천억원 + 수은 1천억원 + 민간출자 8천억원

2. 재원 조달

- 10.4일 기금채를 최초 발행(1,900억원) 하였고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에서 결정(2.961%) → 기금수요 감안, 연내 1~2회 추가 발행

* (참고) 채권 유통수익률(10.2일 종가 기준) : 국고채 2.782%, 수은채 2.965%

- 10조원의 '25년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제출(9.2일)

3. 향후 계획

- 선도사업자의 핵심품목 대체수입·국내생산·기술개발 등 중점 지원 및 금리우대 ※ 중소기업에게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

- 기존 수출입 금융과 지원 대상·범위 차별화* 및 국내·외 정책 금융과 공동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

* 기존 수은 금융으로는 ①수출 비연계 국내사업(국내 요소생산설비 구축 등)이나 ②대출 비연계 지분투자 지원 불가 → 공급망기금은 지원 가능

- 국내 공급망 정책기관(9개)*간 협의회 구성·개최(9.9일), 향후 분기별 개최를 통해 기관간 프로그램 연계, 협업방안 발굴 추진

* 수은(간사), 산은, 기은, 신보, 기보, 무보, 해진공, 코트라(소부장 공급망센터), 중진공

참고 1

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

① 공급망안정화 핵심사업 지원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

○ (설치) 수출입 지원, 공급망 금융 및 채권발행 등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수출입은행에 별도의 정책금융 기금을 설치

○ (재원) 정부 보증 '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' 발행

○ (규모) 5조원 ('24년 하반기)

* '24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 발행을 위한 국가채무보증 국회 본회의 통과('24.2.29.)

② 지원대상 및 절차 등

○ (대상) 공급망안정화법령에 따른 지원 분야/대상 사업

구분		기금지원 분야/대상	지원여부
분야 (법 제38조)		- 경제안보품목의 확보, 도입 및 공급	수은 기금심의회 심의·의결
대상	법 (제41조)	- 선도사업자*가 추진하는 사업 ※ 중점지원	
		-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사업	
		-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	
시행령(제30조)		- 공급망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	

* (선도사업자)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

○ (조건) 사업타당성, 기금 자금원가(조달비용), 차주 신용도, 시장 금리 등을 감안, 경쟁력 있는 조건(금리 및 한도)으로 지원

○ (절차) (사업확인) 지원대상 사업 확인* → (금융심사) 금융지원 타당성 종합 심사** → (최종심의) 기금운용심의회 심의

*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관련성 및 시급성 등

** 사업타당성, 지원필요성(해외의존도 등),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

○ (방법) 대출, 보증, 출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 활용

참고 2

공급망안정화기금 `24년도 기금운용계획 (요약)

※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(`24.9.5) 의결사항

1. 기본 방향

- **[지원 목표]** 품목별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의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**승인금액 기준 최대 4.5조원* 이내로 설정**
 - * 5조원(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액) - 0.5조원(유동성 대응 예비한도)
-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**분야별·품목별 시범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**를 구축하고, 기금의 제도·시스템 안착 도모
- **[자금종류별]** **대출·보증을 중심으로** 자금을 지원하되, 사업별 특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 취급도 고려
 - **(대출·보증)**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금수요 및 기금채권 발행한도 등 감안, **최대 4.5조원 범위내 지원 추진**
 - **(투자)** 상대적 고위험성 및 설립 초기 낮은 손실흡수 여력을 고려, 정책적 필요성 등 지원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한해 **제한적으로** 취급

2. 세부 지원전략

① 자금 지원

가. 지원대상 및 중점 지원분야

- **[지원대상]** 핵심품목·서비스의 ①확보·도입, ②국내외 시설투자·운영, ③기술도입·상용화 등 **안정화 사업**을 포괄적으로 지원
- **[중점 지원부문]**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**첨단전략산업·자원안보·필수재·물류 4대 부문 중점 지원**

< 중점 지원부문 및 유관 품목·서비스(예시) >

4대 부문 - 12대 분야											
①첨단전략산업				②자원안보		③경제필수재			④물류 인프라		
이차 전지	반도 체	디스 플레이	제약 바이오	핵심 광물	에너 지	식량	산업 원료	기계 장비	운송	저장 비축	항만 인프라

나. 세부 추진방안

- ① 효과적인 공급망 지원을 위한 기금 맞춤형 금융지원체계 구축
- ② 정책목표를 고려한 기금 특화사업 중점 발굴·지원
- ③ 기금-수은금융 연계를 통한 공급망 정책금융 고도화
- ④ 공급망위험 대응에 취약한 중견·중소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
- ⑤ 공급망 전문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등 국내외 협력 강화

② 기금재원 조달

- ☐ 원칙적으로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되, 채권발행 최소 필요규모에 미달하는 초기 운용자금 등은 차입금 활용

< '24년 재원별 자금조달 계획 >

재 원		규 모	비 고(상환기간 등)
기금채권	원화	5조원 이내	실제 자금소요 대응(최장 10년)
	외화		
차입금		실소요금액*	단기적 자금소요 대응(최장 1년)
기 타		-	대출 원리금 회수자금 등

* 기금 초기 운용자금 확보, 단기적 자금 미스매치에 대응한 실소요금액

③ 리스크 관리

- ☐ 기금 특성* 등을 고려하여, 기금의 관리대상 리스크를 설정하고 관리

* 시장리스크 관리 대상 트레이딩 자산 부재, 운영리스크는 전행 통합관리

- (관리대상 리스크) 신용·환·금리·유동성·운영리스크